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4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 상 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,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생산성 제고를 촉진·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9. 2. ~10. 14.)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

5호에 따른 수직농장·식물공장(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

건축물로 한정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

· 운영하는 시설

가. 인공 광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

나.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, 자동제어시스템(양

액, 관수,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)을 갖추는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산업시설용지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조의2(산업시설용지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·식물공장(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·운영하는 시설</u> <u>가. 인공 광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</u> <u>나.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, 자동제어시스템(양액, 관수,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)을 갖추는 것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677